Ⅲ 해외사례

해외사례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적연금 위기를 겪고 공적연금 구조개혁과 공적연금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활용해 보완한 스웨덴의 사례, 사적연금 도입 및 운용의 성공사례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스웨덴

가. 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0층과 1층의 공적연금, 2층의 직역연금,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0층의 최저보증연금(Gurantee Pension; GP)은 연금소득조사를 통해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연금을 보장하여 보충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적연금 수급액이 낮은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저보증연금은 스웨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일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1층의 공적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인 소득연금(Income Pension; IP)과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연금(IP)은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방식,[7] 프리미엄연금(PP)은 확정기여방식(Fully Funded Defined Contribution; FDC)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총 18.5%이다. 이 중 16%는 기존 연금수급자의 소득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7) 소득연금은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만 정해져 있을 뿐 은퇴 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약속되어 있지 않은 확정기여형 방식임. 원래 확정기여형은 개인별로 보험료를 적립해야 하지만 소득연금은 매달 거둬들인 보험료의 대부분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연금임. 대신 소득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적립해두고 그 돈을 다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고 있음

사용되며 나머지 2.5%는 납입자 프리미엄연금 계정에 적립된다.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 모두 가입자가 납입한 만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층의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은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직역연금은 민간에서 운용하고 관리하는 연금이지만 근로자의 90% 이상이 가입된 준강제적 연금제도이다. 직역연금은 4가지 직군의 단체협약에 의해 설계된 제도로 매년 발표되는 기준소득에 따른 등급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납부되고 있다.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등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을 의미한다.

〈그림 Ⅲ-1〉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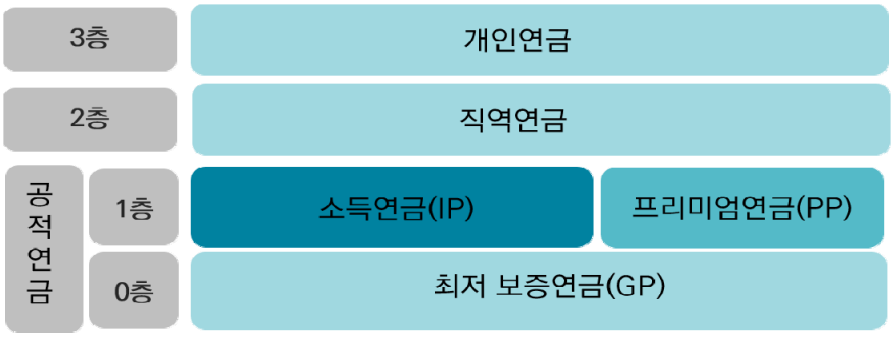

주: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나.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

1) 제도 도입 배경

스웨덴은 1913년 모든 스웨덴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와 연금개혁을 거쳐왔다.

1913년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스웨덴의 노인 부양은 사적 부양체계에 의존하였으며, 공적인 영역의 책임은 지방정부나 민간 개별 직역연금제도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이후 1913년 도입된 공적연금은 기여와 급여가 연계되는 완전적립식 소득비례연금과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충연금으로 구성되었다. 그

러나 당시 도입된 공적연금체계는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저연금 문제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스웨덴은 연금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소득비례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급여수준이 낮고, 물가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지 않았고, 대부분 노인들이 보충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

이후 소득비례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35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을 보편적 정액급여형태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보충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였다. 기존 공적연금제도는 1946년 기초연금제도(Allmän Fork Pension; AFP)의 도입, 1960년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llmän Tilläggs Pension; ATP, 이하 'ATP'라 함) 도입과 1969년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연금제도의 체계를 갖춰나갔다.

1946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AFP)는 기존 소득비례연금과 보충연금을 통합한 제도이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고령자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1960년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TP)이 도입되었다. 1969년에는 ATP 수급자와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 노인과의 격차가 부각되면서, ATP 미수급자나 저연금자를 대상으로 ATP 급여수준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금융위기에 접어들면서 스웨덴의 경제상황은 연금을 도입하던 1960~70년대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는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을 기준으로 1970년대 67%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말에는 4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6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70년대 말 19.3년에서 24.2년으로 5년 가까이 증가하였다. 인구구조도 1970년대에는 경제활동인구 3.8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하는 수준이었지만 203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5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성장률 역시 연금제도가 도입되던 1960년대에는 연평균 4% 이상이었으나 1990년대 말에는 1.85% 수준이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소득의 37.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표 Ⅲ-1〉 스웨덴 경제 상황의 변화

(단위: %)

구분	성별	1970년대 말	1990년대 말
고령자 근로 비율	남	0.67	0.49
	여	0.34	0.37
60세 기대여명	남	17.3년	20.2년
	여	19.3년	24.2년
부양비		3.8	1.5(2030)
경제성장률		4.45(1960s)	1.85

주: 부양비는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경제활동 인구/연금수급자)
자료: Klevmarken(2002)

〈표 Ⅲ-2〉 스웨덴 개혁이전 연금 2030년 비용률 시나리오

(단위: %)

구분	부양비	소득대체율	비용률
시나리오 1	1.60	60.0	37.5
시나리오 2	2.25	60.0	27.0
시나리오 3	1.60	43.0	27.0

주: 부양비는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경제활동 인구/연금수급자)
자료: Sweden government(2000)

이후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목표로 1998년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때의 개혁으로 현재 기여한 만큼 수령하는 연금체계를 구축하였다.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의 기초연금(AFP)과 부가연금(ATP)을 소득연금(IP)과 프리미엄연금(PP)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공적연금의 확정급여방식은 폐지되고, 소득연금(IP)은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 프리미엄연금은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였으며,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보증연금(GP)를 도입하여 무연금·저연금 수급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표 Ⅲ-3〉 제도 변천 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13년	• 1913년 모든 스웨덴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함 • 소득비례연금(기여연금)+보충연금(소득 및 자산조사 기반)
1946년	•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통합하여 거주요건 충족 시 일정 금액을 수급할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AFP)로 전환함 •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함
1960년대	• 1960년대에는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TP)이 재도입되면서, 공적연금제도가 다시 기초연금제도(AFP)와 소득비례연금(ATP) 구조의 2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충연금제도를 실시함 • 재도입된 소득비례연금은 강제가입 방식이며, 가입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연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함 • 소득비례연금의 도입 이후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와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1969년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함 - 기초연금만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의 최대 55.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
1998년	•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 기존의 기초연금(AFP), 부가연금(ATP), 특별보충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연금(IP)과 프리미엄연금(PP)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최저보증연금(GP)제도를 도입함

자료: 이미연(2021)

2) 1998년 개혁 주요 내용

1998년 개혁 이전까지 스웨덴의 연금체계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AFP)과 소득비례연금(ATP)에 특별보충연금이 덧붙여진 체계였다면, 개혁 이후에는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개인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연금제도의 주체를 국가에서 개인과 기업으로 전환하게끔 도모하였다(송지원, 2018).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의 큰 특징은 ① 최저보증연금(GP), ② 소득연금(IP), ③ 프리미엄연금(PP), ④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Ⅲ-4〉 스웨덴 공적연금시스템

구분	0층	1층	
연금	최저보증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
요율	0%	16%	2.5%
방식	정부지급	부과방식	적립방식
운용	일반재정	AP1~4, AP6	AP7 또는 민간펀드
특징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기여한 만큼 수령	기여한 만큼 수령

자료: 송지원(2018)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① 최저보증연금(GP)

첫 번째로 최저보증연금(GP)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특별보충연금을 없애고 취약계층 중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을 전체 노인에서 저소득층으로 대폭 축소한 대신, 그 급여액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합한 급여액보다 관대해졌다(Hagen, 2013). 최저보증연금은 소득 및 자산조사 대신 연금소득을 조사하여 연금수급액(IP+PP)이 최저보증연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연금소득 조사 시에는 대상자의 자산이나 사적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고, 공적연금의 급여만을 고려한다. 최저보증연금액은 거주기간 및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요건은 스웨덴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최저보증연금액이 증가하며 40년 이상인 경우 완전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40년을 거주한 독신자의 경우 최대 10,631SEK, 기혼인 경우 9,625SEK를 수령하며, 재원은 전액 중앙정부의 일반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최고 GP 급여액은 육체노동자들 평균임금의 약 35%에 해당하며, 퇴직 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Hagen, Johannes, 2013).

다음 〈그림 Ⅲ-2〉는 최저보증연금의 지급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하단의 삼각형 영역은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 수령액이다. 만약 소득 관련 연금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는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금소득이 0SEK라면 최저보증연금이 월 8,597SEK가 지급된다. 부부의 연금소득이 4,966SEK를 넘기 시작하면 지급되는 최저보증연금액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연금소득이 12,530SEK에 도달하면 최저보증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2021년 기준).

〈그림 Ⅲ-2〉 스웨덴 최저보증연금 연금지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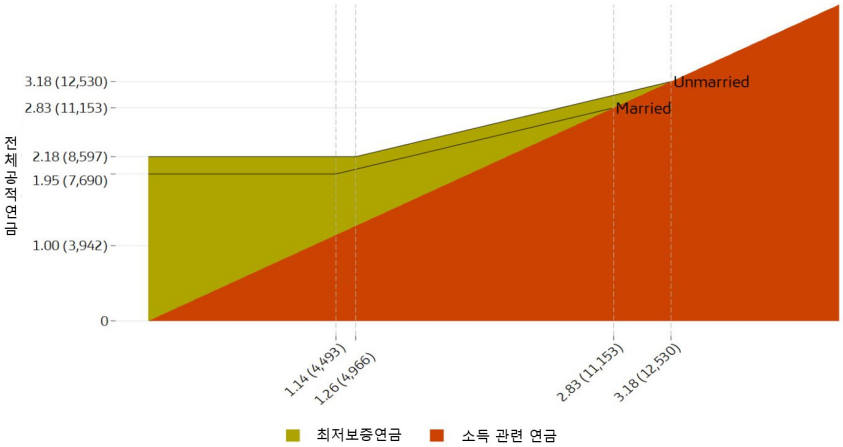

주: 2021년 자료로 본문에 제시된 2023년과 수치상 차이가 있음
자료: Sweden government(2022)

② 소득연금(IP)

두 번째로 기존 확정급여방식(DB)으로 지급되었던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TP)이 폐지되는 대신,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이하 'NDC'라 함)방식의 소득연금제도(IP)가 도입되었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은 연금액이 가입 기간 동안 운영한 기금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축적된 보험료와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률만큼의 수익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남은 수명도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소득연금의 수익률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가상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다.[8] 명목확정기여방식은 은퇴 시점의 기대여명을 반영해 명목상의 적립금을 연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은퇴할수록 기대여명이 짧아져 연금이 증가하게 된다.

$$\text{소득연금연금액} = \frac{(\text{총기여액} + \text{가상이자})}{\text{퇴직시점의 잔여기대수명}}$$

8) 가상 수익률=실질 소득상승률(3년 평균 명목소득상승률-3년 평균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정함

소득연금제도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연금보험료는 18.5%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9.25%씩 부담하고 있다. 이 중 16%는 소득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프리미엄연금 계정에 적립되고 있다. 소득연금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소득연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은 스웨덴 거주 및 근로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없으며, 연금 가입을 위한 연령 상한과 하한은 2004년 폐지되었다. 2023년 기준 연금수급은 63세부터 가능하다.

스웨덴은 소득연금을 통해 거둬들인 보험료 중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자금을 모아 정부 운용의 완충기금(Buffer Funds)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AP 펀드'라고 명칭하고 있다. 소득연금 기금은 정부의 AP1~4, AP6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 급증이나, 고용률 하락,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연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질 때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프리미엄연금(PP)

스웨덴은 보험료의 2.5%를 프리미엄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펀드(AP7) 혹은 민간부문의 보험, 은행, 투자회사 등이 운용하는 연금펀드를 통해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AP7 펀드와 65개 금융회사의 485개 펀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원은 본인의 연금보험료 2.5%의 누적치와 누적된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으로부터 마련하며, 연금 가입자는 언제든지 기금 운용자와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으나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프리미엄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이지만 적립금 운용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운용되며, 은퇴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은 사적연금과 동일하게 기여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총적립금을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이러한 사적연금의 특징 때문에 OECD 등에서는 프리미엄연금을 강제개인연금(Mandatory Personal Pension)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text{프리미엄연금 연금액} = \frac{(\text{총기여액} + \text{운용수익})}{\text{퇴직시점의 예상미래기대수명}}$$

④ 자동조정장치 도입

스웨덴은 소득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령화와 연금재정을 연동해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였으며,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와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는 수급자의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수급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연금화제수가 상승하여 연도별 연금급여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구조이다. 스웨덴은 퇴직 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연금화제수로 나누어 연금을 산정하는데,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연금화제수가 오르도록 산식을 마련하였다. 연금화제수는 퇴직 시점에 출생코호트별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두 번째로,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는 소득연금의 총자산과 총연금부채의 비율인 균형비율(Balance ratio)을 활용하여,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져 1 이하로 낮아지면 소득연금제도의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균형비율이 1 이하로 낮아지면, 연금액에 적용되는 '소득지수(Income indexation)'를 소득지수보다 낮은 '균형지수'로 바꾸어 적용하여 금액이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가 작동되면 소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하지만, 그 결과로 소득연금제도의 재정이 회복되어 비율이 1 이상으로 높아지면 소득대체율도 다시 높아지게 된다(이미연, 2021).

다. 현 제도 현황

1) 제도 개정 현황

스웨덴은 최근 ①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조정, ②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ägg) 도입이 이루어졌다.

연금수급 연령과 관련하여 스웨덴 의회는 2017년 12월 이루어진 연금위원회의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1세에서 64세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20년 1월부터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1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023부터는 63세로 상향조정 했다. 최저보증연금(GP), 소득연금보충금(IPT), 주거수당의

수급연령은 2023년부터 65세에서 66세로 상향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공적연금 수급연령 및 보증연금 수급연령에 기대여명과 연결시키는 목표연령(Riktåldern, target age)[9]이 적용될 예정이다. 목표연령은 스웨덴의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매년 계산하여 6년 뒤에 적용될 연금수급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2020, 2021, 2022년의 목표연령은 67세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6~2028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연금보충제도의 경우 스웨덴은 2021년 9월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ägg; IPT)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1층의 공적연금이 부족한 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저보증연금(GP)과 주거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스웨덴 연금위원회 근로를 통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과 근로소득이 없었던 자의 연금액 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부 재정을 활용한 연금보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22년 기준 공적연금 수급자 약 233만 명 중 126만 명이 연금보충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의 연금액이 인상되었다.

연금보충제도의 수급요건은 66세 이상이어야 하며(1957년 이전 출생자; 65세) 소득비례연금(IP 또는 ATP)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 1년 이상의 근로활동, 월 소득비례연금액이 9,495~17,935SEK이어야 한다. 연금보충금액은 2022년 기준 월 최대 600SEK까지 지급하며, 월 소득비례연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2021년 연금보충제도가 도입되면서, 스웨덴 공적연금은 소득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소득연금보충(IPT), 최저보증연금(GP), 부가연금(ATP)으로 구성되었다. 연금개혁 이후 구제도와 신제도에서 결정되는 연금액은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37년 이전 출생자는 부가연금(ATP) 적용을 받고 1938~1953년 사이 출생자는 ATP와 현재의 소득연금제도의 적용을 모두 받으며 1954년 이후 출생자는 현재의 소득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9) PENSIONS MYNDIGHETEN(2023)

〈표 Ⅲ-5〉 1998년 연금개혁 전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연금 구조	1) 확정급여(DB)형 기초연금(AFP) 2) 소득비례연금(ATP) 3) 특별보충연금	1) 명목확정기여(NDC)형 소득연금(IP) 2) 확정기여형(FDC) 프리미엄연금(PP) 3) 최저보장연금(GP)
지급 개시 연령	65세	61세(2023년부터는 63세, 시기 늦출수록 증액됨)
적용 범위	1) 기초연금(AFP): 모든 국민 2) 소득비례연금: 기준소득액(Base amount) 이상의 소득을 가진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3) 부분연금: 소득비례연금 동일	1) 확정기여연금: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2) 적립식 개인연금: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3) 최저보장연금: 모든 거주자
보험료	1) 기초연금 • 피용자: 기여하지 않음 • 자영자: 평가소득의 6.03% • 사용자: Payroll의 5.86% • 정부: 비용의 약 25% 2) 소득비례연금 • 피용자: 평가소득의 1% • 자영자·사용자: 13.0% • 정부: 기여하지 않음 3) 부분연금 • 사용자·자영자: 0.2% • 정부: 기여하지 않음	1) 피용자: 기준소득액의 24%를 초과하는 소득부터 기준소득액의 7.5배까지 평가소득의 9.25% 2) 사용자·자영자: Payroll의 9.25% 3) 정부 : 최저보장연금의 비용 부담 ※ 보험료의 구성: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 합계인 18.5%는 확정기여연금부분 16%와 적립식 개인연금(개인계정) 부분 2.5%로 구성됨
재정방식	PAYG(Pay As You Go)	NDC

자료: Eknews(2008); 국민연금연구원(2012)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2) 현황

2022년 말 기준 소득연금 수급자 200만 명의 약 50.4%(101만 명)는 소득연금과 최저보증연금을 함께 받고 있으며, 전체 공적연금지급액[10]에서 최저보증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 1,880,800,889SEK(한화 약 2,283억 원[11])에 해당한다. 스웨덴 의회는 2022년 6월 최저보증연금액을 1인 기준 최대 10,631SEK까지 인상하였으며, 소득비례연금의 소득 기준 상한선 또한 확대하면서 최저보증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 2021년

10) 소득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소득연금보충(IPT), 최저보증연금(GP), 부가연금(ATP) 지급액의 합을 의미함
11) 1SEK=121.41원(2023년 2월 12일 기준)

말 수급자 수는 69만 명, 2022년 말 수급자 수가 101만 명으로 새로운 연금수급자 수가 약 32만 명 증가하였다.

소득연금보충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2022년 말 약 126만 명으로 소득비례연금(IP+ATP) 수급자의 약 33%가 소득연금보충액을 수급하고 있다. 총 지급액은 514,153,018SEK(한화 624억 원)으로 총 공적연금 지급액의 2%에 해당한다. 100% 정부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최저보증연금과 소득연금보충액이 전체 공적연금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로 비중이 크지 않으나, 최저보증연금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스웨덴 공적연금 유형별 수급자 및 지급액(2021~2022년)

(단위: 명, SEK, %)

구분	2021		2022	
	수급자 수	지급액	수급자 수	지급액
공적연금	2,301,730	30,958,396,827	2,326,888	33,278,347,283
최저보증연금(GP)	688,881 (30)	1,160,191,673 (4)	1,006,407 (43)	1,880,800,889 (6)
소득연금보충금(IPT)	1,247,446 (54)	50,915,316 (2)	1,260,329 (54)	514,153,018 (2)

주: 괄호 안 수치는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지급액에서 해당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Swedish Pension Agency(2023)

라. 기대소득대체율

제도개혁 이후 기대되는 소득대체율은 21세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65세 은퇴 시 소득연금으로부터 약 37%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고, 프리미엄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2.5%와 2.0%씩 적립한 후 수익률을 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22%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소득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그리고 퇴직연금을 합친 총 소득대체율은 약 61%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Ⅲ-7〉 사적연금 수익률에 따른 기대소득대체율

(단위: %)

은퇴 연령	소득연금	프리미엄(2.5%)+퇴직연금(2%)			전체(IP+PP+퇴직)		
		수익률			수익률		
		2%	5%	8%	2%	5%	8%
64세	0.37	0.10	0.20	0.43	0.48	0.58	0.80
65세	0.39	0.11	0.22	0.47	0.51	0.61	0.86
66세	0.42	0.12	0.23	0.52	0.53	0.65	0.93
67세	0.44	0.12	0.25	0.57	0.57	0.69	1.01
68세	0.47	0.13	0.27	0.63	0.60	0.74	1.09
69세	0.50	0.14	0.29	0.69	0.64	0.79	1.19

자료: Edward Palmer(2003)

마. 스웨덴 연기금 운용 현황

1) 소득연금(IP)

스웨덴 연기금 운용 펀드인 AP는 재무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소득연금의 준비금과 프리미엄연금의 적립금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소득연금의 준비금은 2000년에 설립된 AP1부터 AP4, AP6과 같은 5개 정부기금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AP1부터 AP4까지는 동일한 초기자본금과 투자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독립적이고 경쟁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산구성, 투자정책, 운용조직, 위험관리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AP1~AP4와 달리 AP6는 주로 국내 비상장기업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AP 기금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연금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임금 하락, 고용률 하락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연금수급과 지출의 균형이 깨질 때 충격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Ⅲ-8〉 AP 기금 현황(2021년)

(단위: 억 SEK, %)

구분	기금 규모	수익률(연평균, 10년)
AP1	4,660	20.8(16.9)
AP2	4,410	16.3(9.5)
AP3	5,023	20.7(11.1)
AP4	5,276	19.2(11.8)
AP6	673	49.1(13.8)
AP7	9,669	31.5(15.0)

자료: AP1, AP2, AP3, AP4, AP6, AP7, 각 연례보고서

AP는 매달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연금지급에 충당하고 남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펀드 AP1~AP4와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 AP7을 합한 국가 전체 연금펀드의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 400억 SEK 수준이다. AP1~AP4의 2021년 기준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0.7%, AP7의 수익률은 31.5%(연평균 15%)이며, AP1~AP4의 자산구성은 주식, 채권, 기타투자가 약 5:3:2의 비율로 운용되고 있다.

2) 프리미엄연금

프리미엄연금의 적립금은 정부기관인 PPM이 관리하고 있으며, PPM은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일괄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은 PPM과 계약한 486개(2020년)의 민간 펀드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용하며, 가입자들은 각 개별 펀드운용사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률과 투자위험을 고려해 최대 5개의 펀드운용사를 선택하여 자신의 선호에 맞는 자산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AP7은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P7이 운용하는 자산은 전체 프리미엄연금(15,790억 SEK) 중 6,800억 SEK으로 43%에 달한다. 투자포트폴리오는 주식형펀드 5,820억 SEK과 지속가능 펀드 2,210억 SEK 등에 실적배당형 투자비율이 높다.

〈표 Ⅲ-9〉 프리미엄연금 자산운용 현황

(단위: 개, 십억 SEK)

구분	2020년 등록펀드 수	연도별 운용자산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주식형펀드	346	388	441	407	517	582
혼합형펀드	37	69	70	66	69	65
지속가능펀드	28	147	166	167	209	221
채권형펀드	74	127	26	30	31	31
AP7 Såfa	1	328	407	433	632	680
합계	486	959	1,110	1,103	1,458	1,579

자료: Sweden government(2022)

AP7은 가입자들에게 AP7 Såfa, AP7 Offensive, AP7 Balanserad, AP7 Försiktig 총 4가지 자산구성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선택지는 고위험 주식형펀드와 저위험 채권형펀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선택 옵션인 AP7 Såfa는 가입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55세 전까지는 고위험 주식형펀드에, 55세 이후부터는 최대 67%의 저위험 채권형펀드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Ⅲ-10〉 AP7 프로그램별 자산구성(2021년)

(단위: %)

자산구성		고위험 주식형펀드 (AP7 Aktiefond)	저위험 채권형펀드 (AP7 Räntefond)
기본 선택	AP7 Såfa (생애주기 투자)	• 55세 이전: 주식형펀드 100% • 55세 이후: 채권형펀드 비중이 67%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국가기금 포트폴리오	AP7 Offensive (공격적 투자)	75	25
	AP7 Balanserad (균형 투자)	50	50
	AP7 Försiktig (신중한 투자)	33	67

자료: 윤희숙·김도형·김종훈(2015)

〈표 Ⅲ-11〉 AP7 및 민간펀드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P7	17.5	31.8	29.1	6.2	15.1	16.4	-2.7	32.2	4.4	31.5	-9.5
민간 펀드	10.2	16.8	17.0	6.5	8.6	10.4	-3.8	27.6	8.0	27.1	-15.1

자료: Swedish Pension Agency(2023)

바. 연금개혁 성과와 한계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 없이 NDC방식의 소득연금제도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이미연, 2021). 스웨덴의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율은 2007년에는 9.5%, 2010년에는 9.6%이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평균 8.9%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장기적으로도 스웨덴은 2030년 이후에도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12〉 스웨덴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율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2007	2010	2013~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60
스웨덴	9.5	9.6	8.9	8.3	8.1	7.9	7.8	7.5	7.3	7.2	7.5
EU	-	-	11.3	11.2	11.4	11.6	11.7	11.7	11.6	11.4	11.2
OECD	-	-	8.9	-	-	-	-	-	-	9.5	10.9

자료: OECD(2017); 이미연(2021)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중 공적연금체계를 소득비례연금과 조건부 기초연금 및 사회연금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는 재정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개혁이었으며, 그 결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혁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연금지출 추계를 살펴보면 연금개혁 이후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지출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Ⅱ-13〉에 따르면 2019년의 연금지출은 GDP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로써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Ⅲ-13〉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단위: %)

구분		2019	2030	2040	2050	2060	2070	2019~2070
스웨덴	총 공적연금	7.6	7.4	7.0	7.0	7.4	7.5	-0.1
	노령연금	6.7	6.5	6.2	6.2	6.6	6.7	0.1
EU	총 공적연금	11.6	12.5	12.8	12.6	12.1	11.7	0.1
	노령연금	9.3	10.2	10.6	10.5	10.2	9.9	0.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유호선·김혜진·문현경(2021)

다만, 1998년 연금개혁 이후 모든 계층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 하락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유호선 외, 2021). 연금개혁 이전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목표 소득대체율이 약 65%로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European Commission(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4.2%, 2070년 소득대체율은 29.2%로, EU 국가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2019년 46.2%, 2070년 37.5%인 것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유호선·김혜진·문현경, 2021).

〈표 Ⅲ-14〉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9년)

(단위: %, %p)

구분	2019	2070	변화 정도
스웨덴	34.2	29.2	-4.4
EU	46.2	37.5	-8.7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유호선·김혜진·문현경(2021)

또한 소득대체율 감소와 함께 연금급여액이 낮아지면서 노인 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한계가 있다. 40년 근로 및 65세 퇴직을 가정하여 소득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전망한 결과, 2005년 53%에서 2050년에 40.4%로 감소하여 44년 사이 13%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의 전망값이 40년 근로를 가정하여 추정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대체율은 50% 이하로 낮아지고 노후 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미연, 2021).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빈곤율[12]은 14.3%로 나타났으며, 스웨덴에서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2005년의 9.5%

12) 여기서 말하는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에서 2016년에는 17.9%로 상승하였다. 이 증가는 연금급여 감소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노인들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Ⅲ-15〉 스웨덴 연금수급자의 빈곤율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스웨덴	9.5	11.3	9.5	15.3	16.2	14.3	16.7	16.7	15.9	14.4	17.2	17.9
EU	-	-	-	-	-	13.9	14.0	13.2	12.6	12.7	13.2	13.8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2. 호주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3층의 연금제도로 구성되고 있다. 1층의 노령연금(Public Age Pension)은 거주 및 소득 등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재원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2층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은 1980년대까지 대상자가 한정된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되었지만 1992년부터 의무가입 제도로 전환된 이후 호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층에는 원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존재한다. 호주 사례에서는 사적연금 중 2층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중심으로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 Ⅲ-16〉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분	1층	2층	3층
명칭	노령연금(AP)	퇴직연금(SA)	개인연금
가입 적용방식	해당 대상 적용	의무가입	임의가입
재원	정부 재정	사용자 기여금	개인 기여금

주: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 기여금(법정기여금) 외에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나. 노령연금

1층의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65.5~67세 이상 노인에 대해 노령연금이 지급된다.[13] 2023년 기준 개인의 경우 연금으로 월 최대 971.5AUD(부부 1,464.6AUD)를 지급하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소득 기준으로 독신자(부부)의 경우 2주간 소득이 204(360)AUD 이하인 노령연금이 최대로 전액 지급되며, 1AUD 증가할 때마다 연금은 0.5(0.4)AUD씩 감액된다. 2주 소득이 2,332(3,568)AUD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층의 노후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다. 슈퍼애뉴에이션

1) 슈퍼애뉴에이션의 도입[14]

1992년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도입 이전 호주에는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노령연금 이외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퇴직연금이 존재하였다. 당시 노령연금에만 의존하는 국민이 많아 노인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재정부담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 정부는 1992년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을 도입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최저 기여 수준은 1992년 3%에서 2022년 10.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12%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15] 사용자의 법정기여금 적용 예외 대상은 ① 월 소득 450AUD 이하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 ② 18세 미만의 비정규 근로자, ③ 65세 이상의 근로자이다.[16] 적용 예외 대상 범위가 매우

13) 1952. 7. 1~1953. 12. 31생은 65.5세, 1954. 1. 1~1955. 6. 30생은 66세, 1955. 7. 1~1956. 12. 31생은 66.5세, 1957. 1. 1 이후 생은 67세부터 연금을 지급함

14) Australian Government, Superannuation

15) 임금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정기여금 외에 자신의 소득으로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없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음

16) SuperGuide(2023)

제한적이고 호주 국세청에서 기여금 납부를 강제하기 때문에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표 Ⅲ-17〉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여율 변화

(단위: %)

기간	기여율	적용방식
1992. 7~2002. 6	3~3.5	점진적 증가
2002. 7~2013. 6	9	-
2013. 7~2014. 6	9.25	-
2014. 7~2021. 6	9~9.5	-
2022. 7~2026. 6	10~12	점진적 증가

자료: APRA 홈페이지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은 특성에 따라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자기관리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금(사업자)은 가입자의 기금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조하는 금융상품 중 가입자가 가입할만한 상품을 선별하여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산이 운용될 수 있는 디폴트옵션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2005년 7월 기금선택제 도입으로 가입 근로자들은 본인이 속한 기업 또는 산업에서 제공되는 퇴직연금 기금뿐만 아니라 소매형 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에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 근로자가 특정 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기금에 자동 가입이 된다.

〈표 Ⅲ-18〉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금 유형

유형	내용
기업형기금 (Corporate funds)	•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의 원형 • 근로자를 위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금 • 가입자격은 근로자로 제한되지만, 기금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 가능
산업형기금 (Industry funds)	• 특정 산업에 속한 근로자의 퇴직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 • 가입대상이 특정 산업종사자로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
공적기금 (Public Sector funds)	•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만 가입 • 가입자가 공공부문을 떠난 이후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허용
소매형기금 (Retail funds)	• 주로 은행,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 보험대리점이나 재무설계사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별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해 비용 부과
자기관리기금 (Self-Managed Super Funds; SMSFs)	• 최대 6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금 • 가입자가 수탁자가 되어 기금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짐 • 주로 부유층이 가계 단위로 설립하여 운영

자료: 이경희(2018); 강성호 외(2022)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은퇴 후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55~60세로 다르다. 또한 은퇴 연령에 도달하더라고 적립금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60세 이전의 가입자는 반드시 퇴직상태여야 하고 취업 의사가 없어야 하며, 60~65세의 가입자는 신청 당시 퇴직상태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가입자는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립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슈퍼애뉴에이션 적립금 수령 시 연간 최저 인출 금액은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표 Ⅲ-19〉 은퇴 연령 및 최저 인출 비율

(단위: 세, %)

구분	출생 연도 또는 수령 연령	은퇴 연령 또는 인출 비율
은퇴 연령	1960년 7월 1일 이전	55
	1960년 7월 1일~1961년 6월 30일	56
	1961년 7월 1일~1962년 6월 30일	57
	1962년 7월 1일~1963년 6월 30일	58
	1963년 7월 1일~1964년 6월 30일	59
	1964년 6월 30일 이후	60
최저 인출 비율	65세 이하	4
	65~74세	5
	75~79세	6
	80~84세	7
	85~89세	9
	90~94세	11
	95세 이상	14

자료: moneysmart, “Getting your super”; Firstlinks(2019), “How much can retirees spend and not run out of money?”

한편, 중도 인출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표 Ⅲ-20〉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출이 가능하다.

〈표 Ⅲ-20〉 중도 인출 조건

세부 내용
•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장애로 인한 부대비용 발생 • 본인 사망, 장례비용 등 사망 시 부대비용 발생 • 호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립금이 200AUD 미만, 재무적 곤경에 처했을 경우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긴급 의료비 지출 • 주택 압류 등을 막기 위한 대출금 상환의 경우 • 치명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2년 내 사망 확률이 높은 경우

자료: Way forward, “Withdrawing super to pay debt: What you should know”

2) 중저소득층 재정지원

호주 정부는 2003년부터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

를 대상으로 공동기여제도(Co-contribution)를 도입하였다. 공동기여제도는 호주 정부가 자격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 기여금의 일정 비율(최대 50%)로 보조금(최대 500AUD)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표 Ⅲ-21〉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17]

〈표 Ⅲ-21〉 공동기여제도 적용 조건, 지급비율 및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적용 조건	• 연령: 71세 미만 • 소득 구간: 2022~2023 회계연도 과세소득은 57,016AUD 이하, 소득의 10% 이상이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인 경우 •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금액: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한도(11만 AUD, 2022~2023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 비율	• 연간소득이 39,837AUD 미만: 50% • 연간소득이 39,837AUD 이상 45,837AUD 미만: 40% • 연간소득이 45,837AUD 이상 48,837AUD 미만: 30% • 연간소득이 48,837AUD 이상 51,837AUD 미만: 20% • 연간소득이 51,837AUD 이상 54,837AUD 미만: 10% • 연간소득이 54,837AUD 이상: 0%
예시	• 가입 근로자의 연간소득이 35,000AUD일 때 사용자가 납입하는 기여금 외에 가입자가 연간 1,040AUD를 보험료로 추가 납입함 • 납입된 보험료(1,040AUD)에 50%의 비율을 적용한 보조금(500AUD)은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자동 입금됨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Super co-contributions”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호주 국세청(ATO)은 자격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며,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2017년부터 연간 과세소득 37,000 미만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추가 적립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환급제도(Low income super tax offset)를 시행하였다.[18] 세액환급제도는 자격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부과된 세액의 15%[19]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AUD 한도)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호주 퇴직연금기금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25만 명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세액환급제도의 적용 대상이며, 평균 환급금은 약

17)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Super co-contributions”

18)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Low income super tax offset”

19)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단계에 있어서 기여금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함

370AUD이다. 한편, 2019~2020년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7억 AUD 이상의 세액 금액을 환급하였다.[20]

〈표 Ⅲ-22〉 세액환급제도 적용 조건 및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적용 조건	• 연령: 71세 미만 • 소득 구간: 2022~2023 회계연도 과세소득은 37,000AUD 이하, 소득의 10% 이상이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인 경우 •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금액: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시	• 가입 근로자의 연간소득이 32,000AUD일 때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2019년 기준 기여율인 9.5%에 해당하는 금액 3,040AUD를 보험료로 납입해야 함 • 납입된 보험료(3,040AUD)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액환급금(456AUD)은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자동 환급됨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Low income super tax offset"

마지막으로 슈퍼애뉴에이션에 가입된 모든 가입자는 일정한도(2023년 기준 27,500AUD)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15%까지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호주의 소득세율[21]은 19~45% 수준이므로 15%의 저율과세는 3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입 시 저율과세를 받고 난 이후 은퇴 연령 이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림 Ⅲ-3〉 호주의 소득세율과 저율과세

(단위: %, 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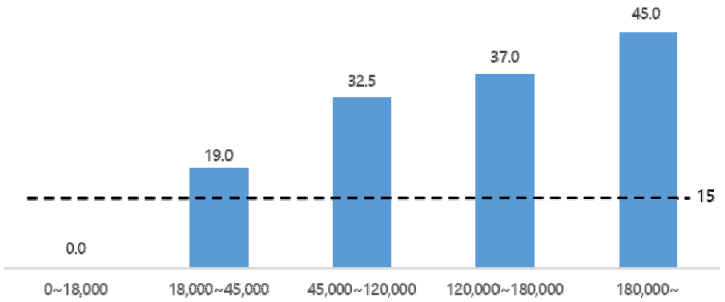

자료: NCBIpc(2023), "AUSTRALIAN TAX BRACKET 2023: ALL YOU NEED TO KNOW THAT IT IS HERE!"

20) Budget.gov.au(2021),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21-22 Budget Related Paper No. 1. 13"

21) 호주의 소득세율은 연소득 18K~45K는 19%, 45K~120K는 32.5%, 120K~180K는 37% 그리고 180K 이상은 45%임

3) MySuper 상품

호주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각 기금에서 설정된 디폴트 투자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하여 자동 운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호주 퇴직연금 디폴트 투자상품은 전형적인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자수익률이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된 1997~2009년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4.5%), 주식 지수상승률(6.6%)보다 낮은 연 3.04%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존의 디폴트 투자상품은 민간부문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상품 간 비교가 어렵고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3년 호주 정부는 투자전략 및 수수료를 단순화한 저비용 구조의 새로운 디폴트 투자상품인 MySuper 투자상품(이하 'MySuper 상품'이라 함)을 도입하였다. 2014년 1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용자 기여금은 각 기금에서 디폴트 투자상품으로 설정된 MySuper 상품에만 자동 투자되며, 기존 디폴트 투자상품에 남아있는 자산은 2017년 7월부터 MySuper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 디폴트 투자상품과 달리 MySuper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APRA가 제시한 최소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소 요건은 ① 단일 상품으로 분산투자 전략 충족, ② 관리비, 가입비, 탈퇴비 등 수수료에 대한 제한, ③ 투자전략, 목표 및 과거 수익률, 위험률, 수수료 등 정보에 관한 표준화된 공시체계, ④ 적용 제외 방식으로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 제공이 있다.[22] APRA는 MySuper 상품 인가 요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MySuper 상품의 핵심 정보('MySuper Product Dashboard')를 공시하도록 요구했다.[23] 퇴직연금 사업자는 MySuper 상품의 핵심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정보 공시 내용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개 항목인 ① 목표 수익률, ② 실제 수익률, ③ 목표와 실제 수익률 간 비교, ④ 투자위험 수준, 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설명이 있다.[24] 또한 APRA는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가입자가 MySuper 상품을 쉽게 비교할

22) The Treasury(2011), MySuper working group, "Defining MySuper"

23) APRA, SRS 700.0 Product Dashboard

24) 목표 수익률은 MySuper 상품이 설정한 장래 10년 동안 달성하는 수익률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수수료 및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의미함. 실제 수익률은 MySuper 상품이 실제 달성한 과거 10년(10년 미만 시 전체 투자 기간) 성과이며, MySuper 상품에만 연평균 50,000AUD를 투자하는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순수익률을 의미함. 목표와 실제 수익률 간 비교는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의미하며, 목표와 실제 수익률에 관한 이동 평균값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 그래프로 표현해야 함. 투자위험 수준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투자기간 20년 동안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 수(횟수)를 의미함. 마지막 항목인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MySuper 상품에 관한 투자, 운용 및 자문 수수료를 의미함

수 있도록 핵심 정보의 공시 양식도 표준화하여 제시했다. 이상에서 설명했듯이 APRA는 MySuper 상품별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시함으로써 가입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보장하고 상품 제공자 간의 경쟁 강화와 투자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Ⅲ-4〉 MySuper 상품 공시 사례(2022년)

MySuper Product Dashboard (under age 55) - Bendigo Growth Index Fund

Use this dashboard to compare Bendigo MySuper to other MySuper products. Go to ASIC's Money Smart Website (www.moneysmart.gov.au)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pick the right MySuper fund for you.

Return target	CPI plus 3.3% p.a. after fees and taxes. Future returns cannot be guaranteed. This is a prediction.
Return	9 year average annual return of 6.49% as at 30 June 2023.
Comparison between return target and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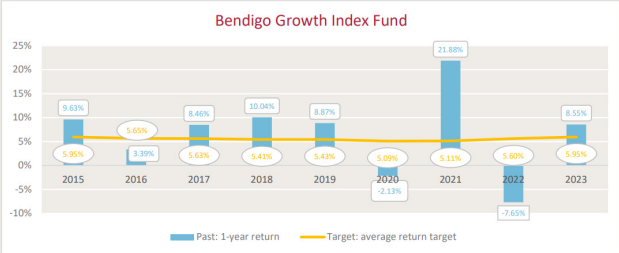 It will not be possible to show a 10 year moving average return for the MySuper Product Dashboard (under age 55) - Bendigo Growth Index Fund until the financial year ended 30 June 2024. Past performance is not an indication of future performance.
Level of investment risk	Medium to High Negative returns are expected in 3 but less than 4 out of every 20 years. The higher the expected return target, the more often you would expect a year of negative returns.
Statement of fees and other costs	$338 per year Fees and other costs for a member with a $50,000 balance.

주: 상기 그림은 Bendigo Superannuation의 MySuper 상품(지수연동형 펀드)이며, 자세한 설명 내용은 아래 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료: Bendigo Superannuation(2023), "MySuper Product Dashboard(under age 55) - Bendigo Growth Index Fund"

2019년 11월부터 APRA는 MySuper 상품의 투명성 제고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MySuper 상품의 히트맵('MySuper Heatmap')을 매년 발표한다.[25] 히트맵은 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 운용결과의 지속가능성[26]을 평가하여 그라데이션 색상을 이용하

25) APRA(2019), "APRA unveils MySuper heatmap"; "Superannuation heatmaps"

26) 투자성과는 MySuper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일반 펀드인 경우 3년, 5년, 8년 운용기간의 투자수익률, 포트폴리오가 분산된 라이프사이클 펀드인 경우 각 라이프사이클 단계의 투자수익률을 의미함. 수수료와 비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립금이 1만 AUD, 2.5만 AUD, 5만 AUD, 10만 AUD의 대표 계좌의 관리비 및 총 비용(수수료와 비용 포함)을 의미함. 운용결과의 지속가능성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를 미래까지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운용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MySuper 상품의 3년 동안의 적립금 증가율, 현금흐름비율, 롤 오버 비율을 포함함(APRA(2022), "Methodology Paper-MySuper Heatmap")

고 항목별로 MySuper 상품의 '성적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이 관련 벤치마킹 이하 수준을 기록한 MySuper 상품들은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또한 APRA는 이용자가 히트맵을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화형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이용자는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항목(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 운용의 지속가능성 등)별 MySuper 상품의 '성적표'를 열람할 수 있다.[27] APRA는 2019년 히트맵 발표 이후 MySuper 상품의 수수료 수준이 하락했으며 22개 MySuper 상품이 합병되었거나 운영 종료됐다고 발표했다.[28]

〈그림 Ⅲ-5〉 MySuper 상품의 히트맵

MySuper Product Heatmap								
MySuper product name	Investment performance		Fees and costs				Sustainability of member outcomes	
	6 year Net Investment Return (NIR) p.a.	6 year NIR relative to Simple Reference Portfolio p.a.	Administration fees disclosed ($10,000 account balance)	Administration fees disclosed ($50,000 account balance)	Total fees disclosed ($10,000 account balance)	Total fees disclosed ($50,000 account balance)	RSE Adjusted Total Accounts Growth Rate (3 year average)	RSE Net Cash Flow Ratio (3 year average)
MySuper A							-3.00%	-8.00%
MySuper B	7.30%	1.00%	0.95%	0.35%	1.45%	0.85%	0.00%	4.00%
MySuper C	7.00%	-0.60%	1.30%	0.65%	2.00%	1.35%	-3.00%	1.50%
MySuper D	6.00%	-0.15%	0.50%	0.10%	1.40%	1.00%	1.00%	4.00%
MySuper E	7.90%	2.00%	1.10%	0.50%	1.50%	0.90%	5.00%	-15.00%
MySuper F	9.00%	0.10%	1.30%	0.80%	1.65%	1.15%	-2.00%	3.00%
MySuper G	7.80%	0.35%	1.10%	0.35%	1.90%	1.15%	8.00%	5.00%
MySuper H	8.20%	1.00%	0.90%	0.25%	1.70%	1.05%	10.00%	9.00%
MySuper I	7.70%	0.20%	1.00%	0.40%	1.70%	1.10%	9.00%	8.00%

주: 상기 그림은 APRA가 게시하는 MySuper 상품의 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 운용결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히트맵이며,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평가대상이 관련 벤치마킹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의미함(색상이 진할수록 평가 결과가 나쁨을 의미함)

자료: APRA, "About the MySuper Product Heatmap"

호주 퇴직연금 기금(사업자)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지 않고 MySuper 상품에 투자한다. MySuper 상품 개수는 2017년 109개에서 2021년 81개까지 감소했지만, MySuper 상품의 적립금은 2017년 5,870억 AUD에서 9,020억 AUD까지 증가하고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APRA(2023), "MySuper Heatmap"

28) APRA(2021), "APRA publishes MySuper and Choice Heatmaps"

이 2017년 36.3%에서 2021년 39.8%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MySuepr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 계좌가 전체 퇴직연금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8.6%에서 2021년 66.8%로 상승했는데, 이는 MySuepr 상품의 적립금 비중(39.8%)의 약 1.7배 수준이다. 적립금 규모가 큰 계좌의 경우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액인 경우 MySuepr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Ⅲ-23〉 MySuper 상품 시장의 변화 추이

(단위: 개, 십억 AUD, 천 개, AUD,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MySuper	상품 개수	109	104	97	88	81
	적립금(A)	587	670	747	737	902
	계좌 개수(B)	15,503	15,520	15,193	14,555	14,229
	평균 적립금	36,862	41,735	47,321	48,457	59,768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C)	1,618	1,774	1,925	1,931	2,267
	계좌 개수(D)	26,448	25,813	25,527	22,468	21,307
	평균 적립금	59,000	66,000	72,000	82,000	102,000
MySuper 비중	적립금 비중(A/C)	36.3	37.8	38.8	38.2	39.8
	계좌 비중(B/D)	58.6	60.1	59.5	64.8	66.8

주: 통계치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됨.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계좌 개수, 평균 적립금은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사업자(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등)를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이므로 ATO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superannuation entities";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MySuper products"

2021년 가입자 연령별로 보면 투자 경험이 적고 1인당 평균 적립금의 규모가 소액인 20~30대의 보유 계좌 개수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1인당 평균 적립금의 규모가 큰 40대 이상의 보유 계좌 개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성별로 보면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의 보유 계좌 개수 및 1인당 평균 적립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연령별·성별 MySuper 상품 투자 현황(2021년 6월)

(단위: 천 개, AUD)

연령	계좌 개수			평균 적립금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25세 미만	1,108	1,183	2,300	4,932	5,254	5,088
25~34세	1,737	1,881	3,634	25,324	24,715	24,951
35~44세	1,585	1,605	3,200	57,018	67,295	62,076
45~49세	690	689	1,382	77,634	98,372	87,884
50~54세	654	651	1,307	90,389	116,179	103,134
55~59세	535	539	1,075	105,658	135,423	120,478
60~64세	404	417	822	104,480	128,438	116,562
65~69세	210	227	437	94,279	101,559	97,980
70~74세	89	101	190	78,292	83,061	80,758
75~84세	38	50	88	75,775	86,784	81,974
85세 이상	2	3	4	58,347	64,394	61,947
전체	7,052	7,346	14,440	54,024	63,515	58,742

주: 가입자 중 성별, 나이를 밝히지 않는 가입자가 존재하므로 여성과 남성을 합한 수치는 소계나 전체 통계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MySuper products”

2020년을 제외한 최근 5년 동안 MySuper 상품의 순기여금, 순투자수익, 순증가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순투자수익이 순기여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호주 퇴직연금은 MySuper 상품을 활용하여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5〉 MySuper 운영성과 변화 추이

(단위: 백만 AUD)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순기여금	81,364	34,251	40,359	34,241	35,333
순투자수익	55,485	59,349	52,083	-4,782	139,553
영업수익	144	159	153	154	149
순증가금액	118,891	77,737	77,737	-9,980	164,304
누적 적립금	587,278	747,244	747,244	737,264	901,568

주: 통계치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됨. 순증가금액은 당기 연도 총자산의 1년간 증가금액을 의미함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MySuper products"

호주 정부가 MySuper 상품을 도입하는 목적 중 하나는 수수료를 제한함으로써 가입자의 순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MySuper 상품 도입 이후 2014년 가입자 1인당 정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수준은 2011년 63 AUD에서 70 AUD로 상승했지만, 적립금 대비 수수료 비율 수준은 2011년 0.92%에서 0.80%로 하락했다.

〈표 Ⅲ-26〉 MySuper 상품 수수료 변화

(단위: AUD, %)

구분	1인당 정액 수수료	적립금 대비 수수료 비율	가입자 적립금 규모당 수수료		
			5,000	20,000	50,000
MySuper 상품 도입 전 (2011년 기준)	63	0.92	109	248	525
MySuper 상품 도입 후 (2014년 기준)	70	0.80	108	222	450

자료: Rice Warner(2014); 이경희(2018)

4) 세제혜택

퇴직연금 적립단계에서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Exempt: E) 혜택을 통해 적립금 유지를 장려하고 연금 수령 시 과세(Taxation: T)하는 한국과 달리 호주는 적립단계에서 기여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T)하고 수령 시 인출단계에서 수령금에 대해 비과세(E) 하고 있다. 다만, 적립단계에서 과세를 한다고 하나 호주 정부는 가입자의 자발적

기여금에 대해 세전 기여 및 세후 기여를 구분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① 가입자가 사용자 법정기여금 외에 자신의 세전소득으로 퇴직연금에 추가 기여할 경우, 호주 정부는 한도 내의 가입자 기여금과 사용자의 법정기여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 세율로 과세하며 한도 외의 가입자 기여금을 과세소득으로 한계세율(최고 45%)을 적용한다.[29] 가입자 세전소득의 기여 한도는 2021년 기준 27,500AUD이고,[30] ② 가입자가 자신의 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에 추가 기여할 경우에 호주 정부는 한도 내의 가입자 기여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한도 외의 가입자 기여금에 대해 47%의 세율로 과세한다. 가입자의 세후소득 기여 한도는 2021년 기준 110,000AUD이다.[31] 한편, 호주 퇴직연금 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일률적으로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인출단계는 MySuper 상품을 도입하는 적립단계와 달리 디폴트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수령방식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법정 최저 인출 연령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22% 및 한계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법정 최저 인출 연령 이후, 59세 이전에 적립금 인출 시 비과세 한도[32]는 과세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만은 과세된다(일시금 시 17%, 정기인출[33] 시 한계세율). 반면 60세 이후 인출 시 일시금과 정기인출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이다.

---

29) 2021년 이전에 가입자가 세전소득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연금에 기여할 경우 호주 국세청은 초과 기여금에 대해 페널티(Excess Concessional Contributions; ECC)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페널티는 초과 기여금의 납세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 이자금임(ATO(2023), "Excess concessional contribution charge")

30) 가입자의 세전소득 기여 한도는 연도 및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17년 이전에는 49세 미만 가입자의 기여 한도는 30,000AUD이고 49세 이상 가입자의 기여한도는 35,000AUD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가입자의 기여 한도는 25,000AUD임(ATO(2023), "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31) 가입자 세전소득의 기연한도는 2013년 이전 150,000AUD, 2014~2016년 180,000AUD, 2017~2020년 100,000AUD임(ATO(2023),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32) 2020년 기준 적립금 인출 시의 비과세 한도는 225,000AUD임(moneysmart, "Tax and super")

33) 정기인출은 계좌인출연금(Account-Based Pension), 종신연금, 이행연금(Transition to Retirement Pension) 등 상품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의미함. 계좌인출연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정 최저인출연령(55~60세)부터 은퇴 결정 시 개설하는 금융투자 계좌이며, 가입자가 동 계좌 적립금에 대해 신탁자에게 투자명령을 내리고 지정한 비율로 적립금이 고갈될 때까지 주기로 인출할 수 있음. 이행연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정 최저인출연령(55~60)세부터 개설하는 금융투자 계좌이며 주로 은퇴하지 않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용하는 계좌임(moneysmart, "Transition to retirement"; "Account-based pensions"; "Retirement")

〈표 Ⅲ-27〉 호주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자산운용, 적립금 인출 시의 과세방식

구분		세부 내용
기여금 납부 단계	세전소득 기여 시	• 추가 기여금 납부 한도 이하: 가입자 기여금과 사용자 기여금에 대해 15%로 과세 • 추가 기여금 납부 한도 초과: 가입자 기여금에 대해 한계세율(최고 45%)로 과세
	세후소득 기여 시	•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한도 이하: 0% •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한도 초과: 47%로 과세
자산운용 단계		• 운용수익에 대해 15%로 과세
적립금 인출 단계	법정 최저 인출 연령 이전	• 일시금 인출 시: 전액 22% 및 한계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
	법정 최저 인출 연령~59세	• 일시금 인출 시: 비과세 한도 이하: 0%, 비과세 한도 초과: 17%로 과세 • 정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 0%, 비과세 한도 초과: 한계세율로 과세
	60세 이후	비과세

자료: ATO(2023), “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moneysmart, “Tax and super”

라. 슈퍼애뉴에이션의 성과와 한계

1) 성장

2020년 호주 내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약 1,700만 명으로, 이 수치는 근로자 수(1,291만 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인은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호주 국민 중 202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하나만 소유한 사람은 약 1,260만 명이고, 두 개 이상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사람은 약 450만 명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호주 퇴직연금 계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퇴직연금 계좌 수는 2,440만 개로 2016년에 비해 약 460만 개가 줄어들었다.

〈표 Ⅲ-28〉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별 가입자 수 및 계좌 수 변화 추이(2020년)

(단위: 만 명, 만 개)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	가입자 수	계좌 수
1개	1,260	1,260
2개	340	680
3개	80	250
4개 및 그 이상	30	250
합계	1,700	2,440

자료: ASFA(2021), "Developments in the number and cost of multiple superannuation accounts"

2021년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1조 AUD(약 2,913조 원)로 2017년 2.47조 AUD(약 2,174조 원) 대비 33.8% 증가했다.[34]

〈그림 Ⅲ-6〉 호주 퇴직연금 기금 총자산 및 성장율 추이

(단위: 십억 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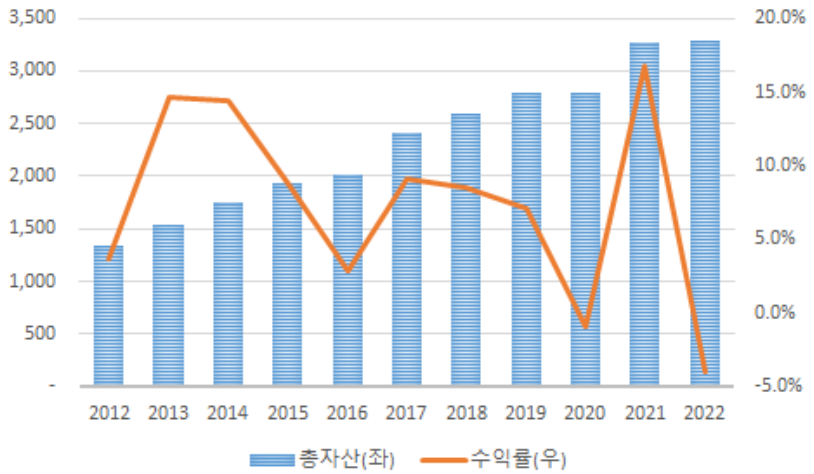

자료: APRA(2023), Annual Super Bulletin

34) 2021년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 증가로 296조 원으로 2017년 168조 원에 비해 76.2% 증가함(고용노동부(2021; 2022), 퇴직연금통계)

2021년에는 산업형기금이 자기관리기금을 능가하여 가장 많은 자금을 관리한 기금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비중도 2017년의 22.0%에서 27.7%로 확대됐다.

〈그림 Ⅲ-7〉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 추이

(단위: 십억 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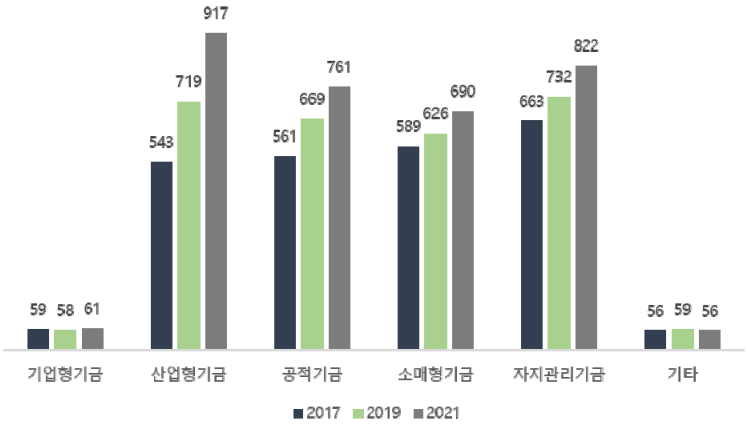

주: 기타 퇴직연금은 APRA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공적기금, 보험펀드, 소규모 APRA 기금을 포함함
자료: ATO(2021), "SMSF overview data tables 2019-20"

호주 전체 퇴직연금 기금의 단기(1년) 투자수익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마이너스(-0.9%)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 강한 반등세(16.8%)를 보였다. 중장기(5년 및 10년 평균수익률) 투자수익률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 축소(5.3%, 6.9%)됐지만 2021년에 2020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8.0%, 7.7%)으로 회복됐다.[35] 2021년까지의 최근 5년 및 10년 평균수익률은 산업형기금(8.9%, 8.6%), 공적기금(8.0%, 8.1%), 기업형기금(7.5%, 7.5%), 소매형기금(7.2%,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형기금의 중장기 투자수익률이 다른 퇴직연금 기금들에 비해 높은 것은 기금 규모가 클수록 자산 배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수익률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5) 한국 퇴직연금(2021년 기준, 1년 수익률: 2.0%, 5년 수익률: 1.96%, 10년 수익률: 2.39%)과는 단순 비교로도 매우 큰 차이가 확인되고 있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4. 17),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 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 원 달성")

〈표 Ⅲ-29〉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AUD,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2.2	2.8	3.1	3.9	4.1
	1년 수익률	9.2	7.6	6.0	0.9	14.2
	5년 평균수익률	9.3	9.0	6.7	5.2	7.5
	10년 평균수익률	4.5	5.8	8.0	7.0	7.5
산업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11.7	14.3	18.0	21.1	22.7
	1년 수익률	10.5	9.9	7.5	-0.7	17.8
	5년 평균수익률	10.2	9.3	8.3	6.2	8.9
	10년 평균수익률	4.9	6.5	8.7	7.7	8.6
공적기금	기금당 순자산	9.9	15.6	16.8	19.1	19.9
	1년 수익률	9.5	8.4	7.5	0.0	15.2
	5년 평균수익률	9.8	8.6	7.7	5.7	8.0
	10년 평균수익률	4.8	6.3	8.5	7.5	8.1
소매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4.7	5.3	6.2	6.7	6.8
	1년 수익률	7.8	7.4	6.5	-2.1	17.1
	5년 평균수익률	8.1	7.0	6.2	4.2	7.2
	10년 평균수익률	3.1	4.9	6.9	5.8	6.8
전체	1년 수익률	9.1	8.5	7.1	-0.9	16.8
	5년 평균수익률	9.2	8.2	7.3	5.3	8.0
	10년 평균수익률	4.1	5.8	7.9	6.9	7.7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1 superannuation entities”

2021년 호주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해외주식 28%, 호주주식 23%, 호주채권 10%, 해외채권 8%, 부동산 8%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되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적립금 구성은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70% 이상이 투자되어 있으며, 부동산 및 인프라 시설과 같은 비금융자산은 전체의 15%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중은 현금 등 전체의 11% 수준으로 원리금 보장형 투자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림 Ⅲ-8〉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배분 비중(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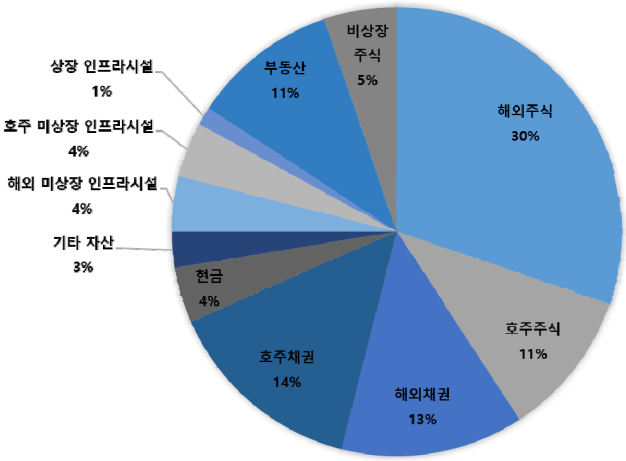

자료: APRA(2023), “Quarterly superannuation performance statistics - September 2004 to March 2022”

2) 성과

호주 노령연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등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빈곤 구제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국민이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슈퍼애뉴에이션이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친 영향은 제도의 영향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노인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에 충분히 가입하지 못한 76세 이상 계층 빈곤율은 27.1%로 호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22.6%에 비해 높은데 반해 슈퍼애뉴에이션에 가입할 수 있었던 66~75세 은퇴자들의 빈곤율은 21.6%로 슈퍼애뉴에이션이 노인 빈곤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Ⅲ-9〉 호주 연령대별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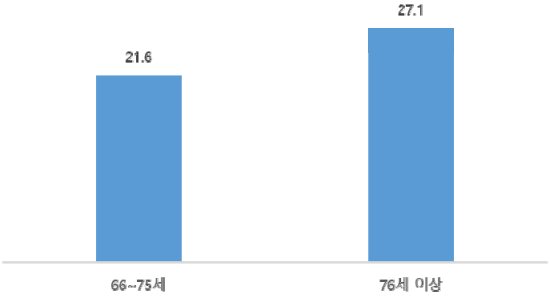

자료: OECD Library

자산운용 및 재무적으로는 최근 5년 동안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순기여금, 순투자수익, 순증가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을 제외하고 적립금 순증가금액이 인출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확충에 있어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Ⅲ-30〉 퇴직연금 운영성과 변화 추이

(단위: 백만 AUD)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순기여금		44,175	21,257	22,916	10,614	23,589
순투자수익		205,258	187,505	182,932	1,860	472,089
영업수익		850	581	528	556	769
순증가금액		397,620	191,600	191,810	7,120	474,784
누적 적립금		2,407,753	2,599,353	2,791,162	2,798,282	3,274,312
인출금		116,079	104,859	110,256	131,698	126,340
	일시금	45,189	43,936	48,214	71,247	69,598
	정기인출금	70,714	60,789	61,905	60,343	56,624

주: 통계치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됨. 순증가금액은 당기 연도 총자산의 1년간 증가금액을 의미함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슈퍼애뉴에이션이 정착되면서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사적연금 도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36]에서 조사된 44개 국가의 연금제도 가운데 호주는 2년 연속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상위 국가인 아이슬란드(1위), 네덜란드(2위), 덴마크(3위), 이스라엘(4위), 호주(6위)의 공통점은 퇴직연금 가입이 (준)의무화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노후소득보장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37]

〈표 Ⅲ-31〉 2022년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구분	국가	등급	총 점수	하위 점수		
				급여수준의 적정성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도의 공정성
1	아이슬란드	A	84.7	85.8	83.8	84.4
2	네덜란드	A	84.6	84.9	91.9	87.8
3	덴마크	A	82.0	81.4	82.5	82.1
4	이스라엘	B+	79.8	75.7	81.9	83.2
5	핀란드	B+	77.2	77.5	65.3	93.3
6	호주	B+	76.8	70.2	77.2	86.8
7	노르웨이	B+	75.3	79.0	60.4	90.3
8	스웨덴	B	74.6	70.6	75.7	79.5
9	싱가포르	B	74.1	77.3	65.4	81.0
10	영국	B	73.7	76.5	63.9	83.0
20	미국	C+	63.9	67.5	61.2	61.7
35	일본	C	54.5	58.0	44.5	63.0
36	중국	C	54.5	64.4	39.3	60.0
38	한국	C	51.1	40.1	54.9	63.5

자료: Mercer(2022),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2 calls for a shift in super mindset”

36) MCGPI는 전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44개 국가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각 국가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개선 영역을 제시함. 동 지수가 각 국가 연금제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급여수준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공정성(Integrity)임

37) Mercer(2022),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2 calls for a shift in super mindset”

이러한 슈퍼애뉴에이션의 성장은 정부 재정으로 노후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호주 정부는 노령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규모는 2060년까지 2%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호주 재무부는 연금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노령연금과 연금과 관련한 세액공제 및 공동기여 등을 모두 합친 연금 관련 재정지출 역시 2060년 GDP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Ⅲ-10〉 호주 정부의 노후소득 관련 재정지출 추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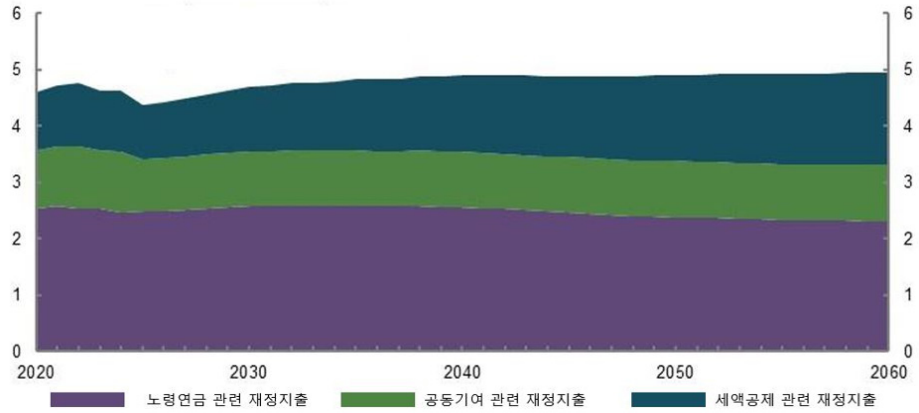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2020)

3) 한계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인출단계는 MySuper 상품을 도입하는 적립단계와 달리 디폴트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 시장에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연금상품이 거의 없다. 적절한 과세방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수령을 억제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지만, 호주 정부는 60세 이후 가입자의 적립금 인출(일시금과 정기인출 포함)에 대해 모두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2021년 적립금 기준, 일시금 인출 비율 55.1%)가 생각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 장수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다. 일시금 인출로 인한 장수리스크 대비 부족은 호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그룹에 속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38] 이에 대응하여 현재 호주 정부는 슈퍼애뉴

에이션 가입자의 정기인출 유도를 위해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39]

호주 정부는 2003년부터 슈퍼애뉴에이션 중저소득층 가입자의 자발적 기여금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기여제도를 실시했다. 2022년 기준 과세소득 42,000AUD 미만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5,000AUD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3~2022년 호주 정부는 중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00억 AUD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2025년 3.65억 AUD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기여제도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는 중저소득층의 자발적 기여금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며, 동 제도에 사용되는 국민 세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입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40]

3. 소결

앞서 살펴본 두 나라는 사적연금을 활용해 국민의 노후소득원을 확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호주의 경우 빈곤 구제 성격의 노령연금 이외에는 국가에서 규율하는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노후 빈곤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을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1990년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 부양비는 높아졌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정체되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으며 단행한 연금개혁 과정에서 NDC제도로 운영되는 공적연금과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가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사적연금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1980년대에 비해 기대수명, 인구구조 그리고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유사한 상황이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호주의 상황과 유사하다.

두 나라에서 사적연금을 활용한 방식들은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활용을 고민하는 우리나

38) Pension at a glance 2021에 의하면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3.7%(2018년 기준)로 높음

39) Parliament of Australia, “Superannuation after 30 years”

40) The Conversation(2022), “Super co-contribution has cost $10 billion to help the wrong Australians – so let’s scrap it”

라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연금개혁 혹은 사적연금 활성화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수반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충분한 연금을 마련하지 못한 계층에 대한 최소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은퇴 이전에 사적연금 적립금의 누수를 막았다. 스웨덴의 경우 공적연금(IP)과 마찬가지로 강제사적연금(PP)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 인출 조건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은퇴 연령(60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납입, 운용 그리고 수령 모든 단계에서 과세를 받게 되어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우리나라 역시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에 중도 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스웨덴의 프리미엄연금과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모두 자산운용 수익률이 매우 높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민간펀드 운용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호주 역시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이를 통한 기금 간의 경쟁유도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및 금융상품 제조사의 역할 강화 및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경우 엄청난 적립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인 빈곤율은 2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호주의 경우 연금화 수령을 강제하지 않아 장수위험을 분산(Hedge)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연금화 수령비율이 매우 낮고,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다. 따라서 적립된 자산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